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폐교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지급 시점 및 기간 변경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63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폐교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지급 시점 및 기간 변경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11. 5.
3. 회부연월일: 2024. 1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 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42조 등).

Ⅲ. 검토의견

□ 폐교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지급 시점 및 기간 변경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속 지급’하는 것에서, ‘퇴직한 때부터 즉시 3년간만 지급한 후,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지급을 재개’하도록 지급 시점 및 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퇴직연금(이하 이 항에서는 “퇴직연금”이라 한다)은 퇴직한 즉시 지급하고, 수급권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제4호를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퇴직연금을</u>

현행	개정안
<신설>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	<u>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제 33조의4의 구직지원금을 지급 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u> ⑦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2항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제2호 및 제3호----- ----- ----- -----

현행	개정안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의 종류,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65세,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이나,

「사학연금법(법률 제13561호)」 부칙 제7조 및 제8조²⁾에 규정된 특

1) 「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사학연금법」(법률 제13561호, 2015.12.15. 개정, 2016.1.1. 시행)

부칙

제7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교직원·공무원 및 군인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례에 따라, 퇴직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수급하고, 이후에는 각 퇴직연도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개시 연령이 연장되어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수급하며,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 ‘2016~2021년 퇴직자’는 ‘퇴직사유 발생시’부터 수급하고, 이후에는 각 퇴직연도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개시 연령이 연장되어 ‘2033년 이후 퇴직자’는 ‘퇴직사유 발생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수급하게 됨.

이와 같이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사유 발생시’부터 ‘퇴직사유 발생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 이내의 시기에 퇴직연금 수급이 개시되므로, 일반적인 수급 개시 연령(60~65세)보다 이른 나이에 연금 수급이 가능함.

-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교직원이 법률 제6330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제8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표 1] 퇴직연금의 수급사유 및 퇴직연도별 개시 연령

수급사유 \ 퇴직연도	2016~ 2021	2022~ 2023	2024~ 2026	2027~ 2029	2030~ 2032	2033~
65세가 되는 때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 초과정원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 경과한 때 등	퇴직사유 발생시	퇴직사유 발생+1년	퇴직사유 발생+2년	퇴직사유 발생+3년	퇴직사유 발생+4년	퇴직사유 발생+5년

자료: 「사학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준용 내용), 부칙 제7조 및 제8조
정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에서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은 학교가 폐쇄(폐교)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은 2019년에 297명이 62억 500만원을 수급하였으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379명이 80억 7,600만원을 수급하였으며, 이 중,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이른 나이의 수급자가 수급한 금액은 30억 2,800만원임.

[표 2]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 수		297	321	340	353	379
수 급 액	폐교 이후~개시연령 전 ¹⁾	4,048	3,685	3,628	3,407	3,028
	개시연령 이후	2,157	2,570	3,251	3,995	5,048
	합계	6,205	6,255	6,879	7,402	8,076

주: 1) 폐교 후,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급한 경우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3년에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자 수 중 조기 수급자 수는 95.0%인 360명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59.1%인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40대도 31.1%인 118명으로 나타남.

[표 3]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개시연령별 · 학교급별 분포현황

(단위: 명, %)

구분	조기수급					일반수급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60대	
인원	1	17	118	224	360	19	379
(비중)	(0.3)	(4.5)	(31.1)	(59.1)	(95.0)	(5.0)	(100.0)

(단위: 개, 명)

유치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특수학교		합계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기관	인원
2	2	6	35	4	84	7	247	2	11	21	379

주: 2023년 수급자 기준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또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폐교 규모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에 121개 유치원과 3개 대학 등이 폐교되는 등 지속적으로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령인구가 2022년 750만명에서 2072년 27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폐교 현황

(단위: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유치원	245	205	130	136	121	837
초·중·고	4	5	1	0	1	11
대학 등 ¹⁾	0	1	1	1	3	6
특수학교	2	0	0	0	0	2
법인	0	0	1	2	2	5
합계	251	211	133	139	127	861

주: 1) ‘대학 등’에는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병원이 포함됨
 1. 「사학연금법」이 적용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표 5] 학령인구(6~21세)(2022~2072년)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합계	750	730	715	698	597	412	425	377	278
증감	—	△20	△15	△17	△101	△185	13	△48	△99
(증감률)	—	(△2.7)	(△2.1)	(△2.4)	(△14.5)	(△31.0)	(3.2)	(△11.3)	(△26.3)
초(6-11)	270	261	248	234	161	156	153	123	94
중(12-14)	137	136	138	140	115	68	83	71	48
고(15-17)	132	136	138	137	133	69	82	74	52
대(18-21)	210	197	190	187	188	119	108	109	8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추계 기준, 2023.12.

이와 같은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 및 폐교 현황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비해 이른 나이인 30~40대에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사학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근무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사학연금 장기추계³⁾의 2020년 추계 결과, 재정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사학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사학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폭은 확대되는 반면 가입자 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표 6] 사학연금 장기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분	2021	...	2029	...	2049	...	2080
총수입(A)	44,389		56,495		64,203		62,851
총지출(B)	35,766		56,520		94,527		162,864
재정수지(A-B)	8,623		△24		△30,324		△100,013
기금액	223,393		251,224		—		—

주: 2020년 제5차 재정재계산 결과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사학연금법」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표 7] 사학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 (증감)	47,782 -	53,170 (5,388)	57,077 (3,907)	61,666 (4,589)	67,559 (5,893)	73,752 (6,193)	80,465 (6,713)	87,093 (6,628)	93,872 (6,779)	101,015 (7,143)
가입자 (증감)	280,721 -	282,467 (1,746)	313,156 (30,689)	317,602 (4,446)	320,326 (2,724)	323,697 (3,371)	327,864 (4,167)	330,322 (2,458)	333,231 (2,909)	333,852 (62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에 따라 폐교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준용을 배제하는 「사학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바 있음.

해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학연금에서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악용한 연금 수급이 우려되며,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 수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금의 재정 영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교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지급 근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해산과 합병시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⁴⁾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당 조항의 준용을 배제할 경우 재산권으로서의 연금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폐교’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조

4)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퇴직한 교직원에 대한 실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 등으로, 해당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8] 폐교로 인한 연금 관련 개정안 내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폐교 관련 부분)	처리경과
1	사학연금법 (제2003589호)	이은재 의원	2016.11.15./ 2016.11.16.	교육위원회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악용한 연금 수급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항 준용 배제(안 제42조제1항 등)	임기만료 폐기
2	사학연금법 (제2106399호)	김철민 의원	2020.12.11./ 2020.12.14.	교육위원회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준용 배제(안 제42조제1항)	임기만료 폐기
3	사학연금법 (제2120051호)	조경태 의원	2023.2.16./ 2023.2.17	교육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학령 인구 감소, 퇴직연금 수급 재직기간 감소(20년 이상→10년 이상) 등에 따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 증가가 예상되므로, 연금 재정의 영속성 및 안정성 담보를 위해, 해당 조항 준용 배제(안 제42조제1항 등)	임기만료 폐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속 지급’하는 것에서, ‘퇴직한 때부터 즉시 3년간만 지급한 후,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지급을 재개’하도록 지급 시점 및 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⁵⁾

[표 9] 현행법과 개정안의 퇴직연금 수급 시점 및 기간 등 비교

현행	개정안
○ 퇴직한 시점에서 <u>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속 지급</u>	○ 퇴직한 <u>즉시 3년간 지급</u> →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u>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 지급 정지</u> → <u>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지급 재개</u> * <u>구직지원금 수급시 해당 수급액 제외</u>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u>준용</u>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u>수정 준용</u>

5) 개정안에 규정된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한 때부터 ‘즉시 지급’되므로, 퇴직연금 ‘지급 시작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수급하는 조기퇴직연금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퇴직연금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상 조기퇴직연금 조항을 준용하지 않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퇴직한 때부터 즉시 3년간만 연금을 지급하고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30~40대부터 계속 연금을 수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취업 의욕 감소 문제, 조기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기금 재정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퇴직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퇴직한 때부터 즉시 3년 동안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자발적 조기퇴직으로 인한 실업 기간 동안 수급자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 적용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 기간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권으로서의 연금 수급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6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 비해 연금 수급기간이 감소하게 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연금 수급을 기대하는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이를 재산권으로서의 연금 수급권 침해로 인식할 수 있음.

[표 10] 현행법과 개정안의 퇴직연금 수급기간 비교(예시)

직제 개정 등에 의한 퇴직 연령		57세	56세	55세	54세	53세	52세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수급기간	현행(A) 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개정안(B) ²⁾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차이(A-B)	—	1년	2년	3년	4년	5년
일반적인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65세	65세	65세	65세	65세

주: 1) 현행: 퇴직 5년 후부터 65세 전까지 예) 57세 퇴직시, 62세부터 64세까지

2) 개정안: 퇴직 즉시부터 3년간 예) 57세 퇴직시, 57세부터 59세까지

다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권에 ‘사회적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그 재원인 ‘교직원 기여금, 국가 부담금, 법인 부담금’을 ‘사회보장급여, 보험료, 후불임금’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비록 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으며, 입법자로서 연금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⁶⁾

다음으로, 폐교 등에 따른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직제·정원의 개정·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퇴직연금에,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를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사학연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16헌바341, 2017.12.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9헌바102, 2010.4.29.) 등 참고

금법」에서 이를 수정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두 연금은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이나, 기본적으로 공무원 또는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급여의 종류, 급여액 산정방법 등이 유사하며, 급여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인 국가 또는 학교법인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일치하므로,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므로,⁷⁾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다만, 폐교 등에 따라 재직 중인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교육공무원은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감⁸⁾ 소관 지역 내 학교로의 전보 등을 통해 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폐교 등으로 교육공무원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

7)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8헌바106, 2000.6.29.) 참고

8) 「교육공무원법」

제30조(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각 학교별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는 사립학교 교직원⁹⁾은 다른 학교로의 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퇴직이 불가피하므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폐교가 증가할 경우, 폐교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학연금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므로, 두 연금 대상의 상황 차이에 따른 연금 재정 변화를 감안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사학연금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사학연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¹⁰⁾

법률 개정은 현행 제도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필요성, 기대되는 효과,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16헌바341, 2017.12.28.) 참고

참고로, 개정안은 제42조제6항 단서에서 급여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지원금 도입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323호)」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해당 개정안과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폐교·구조조정 증가, 연금 수급요건 완화(재직기간 20년→10년 이상)로 폐교연금 조기 수령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학연금 재정건전성 및 연금수급자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일반적인 수급자는 65세 도달 시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폐교 퇴직자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30대 연금 수급자 발생 - 개정안과 같이 폐교연금 수급기간을 조정하여 일반적인 연금수급자(65세 수급 개시) 대비 과도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견없음 - 노후소득 보장이 연금제도의 주목적임을 감안할 때, 폐교 등에 따라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연금수급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폐교연금 지급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개정안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참고로 본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20532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직지원금 도입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제주국제대학교: 신중검토 - 사립학교 교직원의 혜택 중 하나가 고용의 안정성과 연금의 상대적 고혜택이며, 이는 자의에 반하는 퇴직의 경우 수년 안에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법 조항이 포함되는 것임. - 그런데, 폐교 증가가 예상되며 다른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 개정에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189